

강사인사규정

제정 2019.08.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의한 “강사”의 임용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비전일제로 근무하는 강사를 말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3조(자격) 강사의 자격은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는 자로 한다.

②강사는 연령이 65세를 초과한 자도 임용할 수 있다.

제4조(임용시기) ①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5조(채용절차) ①강사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 심사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강사임용등에관한시행세칙」에 따른다.

제6조(임용기간) ①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기중에 임용된 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학기말까지를 1년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으로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사망으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③임용기간은 통산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년 초과자에 대하여 학사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학과(부)장의 재임용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임용할 수 있다.

④1년 이상의 연구년, 휴직, 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를 위해 강사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공고 및 계약서에 재임용 제외조건으로서 연구년 종료, 휴직자 복직,

보직 종료 등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재임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계약내용)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한다.

1. 임용기간
2. 임금 및 강의시간(방학기간을 포함)
3.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요건 및 절차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제9조(임용취소)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임용 시 제출서류가 허위사실 또는 허위 증명인 경우
3.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과목이 속한 학부(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 상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4.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

제10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1.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
2.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

제11조(면직사유)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을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 정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6.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7.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8.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10.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 할 수 있다.

1. 소속 학부(과) 또는 학사조직이 폐지되는 경우
 2.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강된 경우
 3. 신입생이 없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되어 근무태도 불량으로 서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가. 본 규정 제15조제2항에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은 경우
 - 나. 수업 및 휴·보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다. 성적평가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라 강사 임용이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 ③강사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3장 재임용

- 제12조(재임용)** ①제6조제3항에 따라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표 1]의 서식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 ②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호] 서식「강사재임용신청서」 및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임용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③강사의 재임용 심사를 위한 재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재임용 심사 및 재임용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강사임용등에관한시행세칙」에 따른다.
- ④제3항에 따른 강사의 재임용은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검증·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별표 3]의 서식으로 임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강사에게 통지 한다. 이 경우 강사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표 3-1]의 서식으로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⑤재계약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당연 퇴직한다.
- 제13조(재임용 탈락 시 소명)** ①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 신청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 한다.
- ③재임용이 거부된 강사에게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다.
- 제14조(재임용 거부)**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직무 및 근로조건

제15조(의무) ①강사는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법령과 본 대학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연계된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수업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 작성 및 준수
2. “제1호”에 따른 담당 교과목의 강의 및 성적 처리
3.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 지도
4.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교육 이수 : 대학 학사운영 설명회, 성폭력예방 관련 교육, 장애학생 인식 관련 교육 등

제16조(소속) 강사가 본 대학 내의 여러 학부(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교수시간) ①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주당 9시간까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수시간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학점이 인정 되는 교과에 한한다.

제18조(복무) ①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윤리강령 등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강사가 본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소속 학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강사 본인의 사정으로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2개월 전까지 소속 학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타 대학 전임교원이 본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 본 규정에 의한 강사로 본다.

제19조(처우) ①강사의 임금은 본 대학의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②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20조(휴직) ①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21조(휴직기간의 만료 등) ①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면직된다.

②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 중에는 재임용을 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2조(휴직교원에 대한 처우) 휴직중인 강사는 본 대학 강사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3조(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등을 준용하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과 함께 「시간강사위촉에관한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개정 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는 위촉한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면직되며, 신규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사 임용기간만료 통지서

- 소 속 :
- 교 번 :
- 성 명 :
- 임용기간 만료일자 : 20

귀하의 임용계약기간이 위와 같이 만료됨을 통지하오니, 본 대학 강사인 사규정 제12조제2항에 의거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임용 심의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우 송 정 보 대 학 총 장

강사 임용기간 만료통지서 수령 확인증

- 소 속 :
- 교 번 :
- 성 명 :

상기 본인은 강사 임용기간 만료통지서를 아래와 같은 일자로 수령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수령일 : 20 년 월 일

위 수령인 : (서명 또는 날인)

우송정보대학총장 귀하

강사 재임용 통지서

- 소 속 :
- 교 번 :
- 성 명 :

귀하는 20 년 월 일자로 임용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대학 강사인사규정 제12조제3항 내지 제4항에 의거 재임용이 결정되
었음을 통지합니다. 계약체결 일정 등에 대하여는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
다.

20 . . .

우 송 정 보 대 학 총 장

강사 재임용 거부 통지서

○ 소 속 :

○ 교 번 :

○ 성 명 :

○ 생년월일 :

○ 재임용 거부 사유 :

상기와 같이 재임용 거부를 통지 합니다.

아울러, 본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재임용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우 송 정 보 대 학 총 장